

심사대상 : 작업장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보고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재정경제부

심사위원

성명	서명	안전 역량	안전수준				안전 성과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이 승 길	이 승 길	○	○				○
남 기 훈	남 기 훈	○	○				○

본 심사의 주된 사항은 개별 소관법령에 따라 실시한 안전평가 결과와 각 기관에서 제출한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근거로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I 기관 현황

기관명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관장 (25년말 기준)	김경환								
소재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설립목적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											
주요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모기지 공급 ○ 유동화증권 발행 ○ 주택금융신용보증 공급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보증 공급 등 											
기관유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심사유형	I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100%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안전관리 등급	'25년도(예비)				'24년도				'23년도			
	종합	역량	수준	성과	종합	역량	수준	성과	종합	역량	수준	성과
	3	3	3	2	-	-	-	-	-	-	-	-

II 총 평

- '25년 기관의 종합 등급은 3등급으로 평가되었다. 기관은 안전관리등급심사 예비 기관으로 전년도 종합평가는 진행되지 않았다. 향후 기관은 금년도 평가에 따라 도출된 개선과제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전사에 전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안전역량)** 3등급으로, '체계역량' 분야의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지표에서 가장 낮은 득점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노동자 건강유지·증진 활동 체계'가 우수하게 심사되어 향후 기관의 안전책임계획에 대한 성과가 기대된다.
- **(안전수준)** 3등급으로, '작업장' 분야가 C등급 평가되었다. 특히, '작업장 기본 안전보건관리 수준' 및 '화재 및 화학물질사고 예방 수준' 등 모든 지표에서 보통으로 심사되어 향후 등급 상승이 기대된다.
- **(안전성과)** 2등급으로, 사고사망자 발생이 없었다. 하지만, 기관의 현장을 방문한 결과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노력 및 성과가 보통인 점을 고려하여 기관은 적극적인 안전문화 활동을 수행하여 보다 개선된 안전보건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Ⅲ

범주별 개선 필요사항

○ 안전역량

개선 필요사항

1. 안전보건경영방침 개정 시 내·외부 이해관계자 및 구성원 의견이 반영되도록 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기준 정비
2. 지점 등 현업 특성에 맞는 안전업무 및 역할 정비
3. 안전전담조직의 업무 범위에 대한 검토 필요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시 대면회의 및 구성원 의견 반영이 이루어지도록 운영 절차 정비
5. 세부 추진과제별 예산 편성과 집행이 연계되어 관리되도록 예산 운영기준 및 성과관리 절차 정비
6. 교육훈련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 필요
7.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절차서·지침 간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적용 기준 및 준용 근거 정비
8. 안전점검 실시주기, 주관부서 및 점검결과 조치사항이 일관되게 운영되도록 점검관리 기준 구체화
9. 법령 및 지침 변경사항이 규정에 반영되도록 모니터링 및 반영 절차 정비
10. 전년도 이행결과가 차년도 계획에 반영되도록 환류 기준 및 개선 반영 절차 구체화
11. 과제별 예산과 이행성과 간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관리 기준 정비
12. 이행점검 결과가 계획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이행관리 및 점검절차 구체화
13. 위험성평가 방법 및 위험성 결정 기준 구체화
14. 위험성평가 절차서 및 실시계획 상 책임과 역할 정비 필요
15. 조사 응답기간 확대 및 안내를 통해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대상자 파악
16. 교육 미이수자 및 이행률이 관리되도록 교육관리 및 모니터링 기준 정비
17. 교육 이수율이 전 직원 기준으로 반영되도록 교육관리 기준 구체화
18. 비상상황 시나리오 및 대응수준이 일관되게 운영되도록 시나리오 기준 및 대응 절차 정비
19. 지침상 재해조사 결과 제출 시기 명확화
20. 도급사업 안전관리 기준이 계약조건 및 사업특성에 따라 적용되도록 관리기준 구체화
21.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및 재평가 절차 정비

○ 안전수준

개선 필요사항

[작업장]

1. 훈련 시 밀폐공간 훈련 시나리오에 포함된 보호구 착용 절차 이행 필요
2. 화재대피용 마스크 재배치 및 피난 안내도 상 자동제세동기 위치 표시 필요
3. 「안전작업허가 지침」의 현장작동성 강화 필요

○ 안전성과

개선 필요사항

1. 도출된 개선사항을 단기·중기·장기 계획으로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환류체계 강화

IV 심사 결과

구 분		등급
종합등급 (1,000점)		3
① 안전역량 (300점)		3
② 안전수준 (350점)		3
위험요소별 등급	작업장	C
	건설현장	비해당
	시설물	비해당
	연구시설	비해당
③ 안전성과 (350점)		2

범 주	심사 분야	심 사 지 표	배점	등급
안전역량 [300점]	① 안전역량 배점 및 등급		300	3
	1. 체계 역량	소 계	140	C
		①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30	C
		②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40	D
		③ 안전보건경영 투자	30	C
		④ 안전관리규정 및 절차·지침	20	C
		⑤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20	C
	2. 관리 역량	소 계	160	C
		① 위험성평가 실시 체계	30	C
		② 노동자 건강 유지·증진 활동 체계	20	B
		③ 안전보건교육·안전인식·활동참여	20	C
④ 재해조사 및 비상상황 대비·대응 능력		20	C	
	⑤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관리	70	C	
안전수준 [350점]	② 안전수준 배점 및 등급(분야별 가중치 적용)		350	3
	1. 작 업 장	【작업장 안전관리】	350	C
		① 작업장 기본 안전보건관리 수준	60	C
		② 기계·전기 설비 위험방지 및 추락예방 조치	120	C
		③ 화재 및 화학물질사고 예방활동 수준	90	C
④ 위험 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80	C	

※ 분야별
가중치
적용 후
환산

범 주	심사 분야	심 사 지 표	배점	등급
안전수준 [350점] ※ 분야별 가중치 적용 후 환산	2. 건설 현장	【건설현장 안전관리】	350	비해당
		① 건설발주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체계	20	비해당
		② 건설공사의 착공 전 안전보건활동	50	비해당
		③ 건설공사의 착공 후 안전보건활동	80	비해당
		④ 건설발주현장의 안전보건 여건	25	비해당
		⑤ 건설안전 환경 조성	70	비해당
		⑥ 안전시공 작동 수준	105	비해당
	3. 시설물	【시설물 안전관리】	350	비해당
		①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수준	20	비해당
		② 시설물 안전을 위한 조직의 노력	20	비해당
		③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40	비해당
		④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수준	90	비해당
		⑤ 시설물 사고 및 안전성능 수준	30	비해당
		⑥ 시설물 보수·보강 및 노후화 대비	40	비해당
		⑦ 시설물 안전 전문성 강화 노력 수준	40	비해당
	⑧ 대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수준	70	비해당	
	4. 연구 시설	【연구시설 안전관리】	350	비해당
		① 연구실 안전관리 기반 조성	50	비해당
		② 연구실 연구장비 위험방지	40	비해당
		③ 연구실 전기설비 위험방지	40	비해당
		④ 연구실 시약류 취급 및 보관	50	비해당
		⑤ 연구실 화재 예방	40	비해당
		⑥ 연구실 고압가스 취급 및 보관	50	비해당
		⑦ 연구실 연구환경 및 연구자 보호	40	비해당
⑧ 연구실 생물체(LMO) 감염 예방	40	비해당		
안전성과 [350점]	③ 안전성과 배점 및 등급		350	2
	공통	①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 개선 필요사항 이행수준	60	결측
		② 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100	C
		③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노력 및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40	C
		④ 사고사망 감소 성과 및 노력도	150	A

※ 등급부여 기준(100점 기준 환산점수 적용)

구 분	총 점	1등급(A)	2등급(B)	3등급(C)	4등급(D)	5등급(E)
배 점	100점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1 「안전역량」 범주 심사

1. 체계역량
2. 관리역량

1. 체계역량

[1]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핵심가치

최고경영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며,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전 임직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아울러, 안전보건경영방침은 기관의 사업특성과 제반 안전보건 여건을 반영하여야 하며, 전 임직원이 공유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기관'이라 한다)는 최신 대내·외 안전 환경 변화와 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응하고 최고경영자(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안전경영철학을 반영하고자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안전보건경영방침을 검토받았으며, 안전문화 확산,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안전보건 정책 기조에 부응함과 동시에 기관의 고유 업무 특성을 반영한 안전책임경영 실천 의지를 명확히 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기관은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실효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노동조합 의견을 청취하고, 홈페이지 및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방침 내용을 공개하며, 노사가 공동으로 선포식 및 서명을 개최하는 등 절차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방침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을 기반으로 매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고, PDCA 사이클에 따라 안전보건경영체제를 운영하며 지속적인 점검 및 환류 활동을 추진하는 것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안전보건경영방침을 개정하기 위한 전략회의 및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전 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등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 방안제시 및 실행 노력이 보다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기관장은 '25년 8월 안전보건 조직 진단 컨설팅을 통해 기존 AI 인프라본부장 산하의 안전보건주관부서를 기관장(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직속 부서로 직제개편을 하였으며, 안전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총괄팀과 보건관리팀으로 구성하고, 안전과 보건 업무를 분리함으로써 안전보건업무의 전문성과 충실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직제 규정」상 8명으로 운영되던 전담인력을 비순환 근무 트랙의 산업안전기사자격 보유자인 안전전문가 1인을 채용하여 총 10명의 전담인력을 구성하였다.

이와 함께 각 부서 및 지점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보건지킴이로 선임하여 상·하반기 연수를 실시하는 등 안전전담부서의 기관 내 위상 및 전문성을 높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HF 안전강조주간 및 Smart 경영회의의 기관장 메시지'를 통해 안전을 위한 대내·외 정책을 빠르게 반영하고, 최적의 근무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또한, 기관은 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25년 5회 개최) 운영을 활성화하고, 매월 1회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통한 협력업체와의 의사소통, 분기별 1회의 합동안전보건점검을 통한 현장 근로자와의 애로사항 청취, 노사합동 현장점검 및 지사 순회 점검, 안전보건 슬로건 경연대회 운영 및 안전강조주간을 기관장이 직접 주재함으로서 노조, 구성원 및 수급업체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 있다. 이에 더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매뉴얼을 기반으로 반기별 경영자 검토를 실시하는 등 안전보건 목표 이행 현황 및 안전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안전보건경영방침 개정 시 내·외부 이해관계자 및 구성원 의견이 반영되도록 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기준 정비

[2]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기관 규모와 사업의 종류에 적합한 안전관리체제를(안전관리조직 구성, 안전관리 업무 총괄 권한 부여 등) 구축하고, 안전관리조직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 동기부여 등 안전관리조직 운영 내실화에 힘써야 한다. 또한, 안전근로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등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보금자리론 공급, 주택보증, 유동화 증권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사(4본부 26부서), 4개 지역본부, 31개 지점의 조직으로 직원 1,032명의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관은 안전보건경영체제를 구축하고자 안전보건경영 매뉴얼,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책임과 권한을 정하고 있다. 기관장인 사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정하고 있으며, 기관장 직속으로 안전보건부를 설치하고, 안전총괄팀과 보건관리팀을 두어 기관의 안전보건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지역본부·지점에는 관리감독자 및 안전업무 담당자인 안전보건지킴이를 지정하고 있어 일선 지점에서의 안전활동 추진의 체계는 갖추고 있으나 지점 등의 현업의 특성에 맞는 안전업무 및 역할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기관은 안전보건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안전보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안전보건 조직에 대한 단기·중장기 검토를 추진하였다. 기관의 규모 대비 안전인력 부족 문제, 전담부서 직원의 안전보건관련 자격 보유 등 전문성 제고 방안 등을 검토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변경, 안전조직 직제 개편 및 자격형 전문직위제도 운영을 통한 전문자격 보유자 공개 채용 등은 기관의 전문성 향상에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안전보건부에서 비상업무, 민방위·재난관리 및 경비·보안업무 등을 병행하고 있는 점은 안전전담조직 기능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

기관은 전문직위제 운영 지침에 따라 안전보건부 소속 직원을 자격형·기여형 전문직위로 분류하고 직무급을 우대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안전보건 분야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직원 수요조사를 통해

'25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전 직원 안전보건 분야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안전주관부서 업무교육 및 전문화 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수급업체 직원에 대해서도 사이버과정 등을 통해 교육을 지원하는 등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직원역량교육을 실시하였다. 다만 기관의 업무 및 인적구성 특성상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안전보건전담부서에 우수 인력 배치 및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방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로 운영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안전을 사전에 심의하고, 회의 결과에 대해 내부 전산망인 안전관리 게시판을 통해 근로자에게 공지하고 있다. 다만 위원회에 상정된 안전에 대한 심의·의결과 함께 서면중심의 회의를 대면회의로 확대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검토·조치하려는 절차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지점 등 현업 특성에 맞는 안전업무 및 역할 정비
2. 안전전담조직의 업무 범위에 대한 검토 필요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시 대면회의 및 구성원 의견 반영이 이루어지도록 운영 절차 정비

[3] 안전보건경영 투자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목표 달성을 위해서 충분한 안전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적기에 집행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의 안전예산은 '25년 7,409백만 원으로 전년 집행예산 대비 98%(7,558백만 원) 상향된 수준으로 편성하였다. 최근 공공기관의 예산 절감 기조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안전예산을 유지 편성한 점은 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안전보건경영방침 실천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또한, 예산 편성 이후 집행 실적을 분기별로 관리한 결과 '25년 예산 대비 집행률이 81.3%(임직원 건강검진비 등 12월에 일괄 지급할 예정)로 예산 집행 및 관리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예산을 확정, 집행하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되고 있다.

다만, 안전예산의 편성 시 기관장의 안전경영철학을 반영한 추진 과제 이행의 세부항목별 예산 편성과 집행의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판단된다. 이에 기관장의 안전보건 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세부 목표의 단계적 실천에 소요되는 예산을 진도율에 맞게 계획하고 집행률에 따른 성과까지 추정될 수 있는 계획안 마련 등의 보완이 요구된다.

특히 '25년도 안전보건예산 수립 시 임직원 안전의식 개선,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지식 확대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내부 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편성되어야 할 교육훈련 예산은 증액되지 않고 오히려 전년대비 감소한 7백만 원으로 집행된 점은 환류체계 이행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질 수 있다. 또한, 기관의 안전보건부 전담인력은 순환보직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지원 및 역량 개발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며,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교육에 외부 전문기관을 참여시키는 등 기관의 안전역량 제고 및 내·외부 홍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세부 추진과제별 예산 편성과 집행이 연계되어 관리되도록 예산 운영기준 및 성과관리 절차 정비
2. 교육훈련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 필요

[4] 안전관리규정 및 절차·지침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안전관련 법령*의 요구사항과 기관의 위험요인 및 작업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규정 및 하위 절차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규정 및 절차서·지침 등의 관리를 위한 제·개정 절차 등을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심사의견

기관은 임직원과 종사자, 국민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하였다. 관련 세부사항은 기관이 인증 받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매뉴얼 및 절차서 16종, 지침서 28종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발주현장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기준을 별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해당 안전보건 관련 규범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법규검토 절차를 통해 관계 법령 개정사항의 적기 수용을 통한 규범의 최신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그 예로 「안전보건관리규정」 내 이상기후 대비 안전보건 기준 마련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 후 기후에 따른 근로자 보호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이행을 목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지침서 내 폭염에 대한 정의와 휴식시간 등을 반영한 「계절적 요인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지침」을 제정하였고, 「작업중지제 운영 지침」 개정을 통해 작업중지 대상 급박한 위험목록에 폭염, 한파 등 기후환경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관련 항목을 반영하였다.

또한, 기관의 안전보건 관련 규범과 제·개정사항 이행 및 준수 내실화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거 비상조치계획,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안전보건교육계획 등을 수립·실시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 이행사항 점검을 수행하여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절차 준수여부와 안전보건 업무수행 충실도 평가여부 등을 자체 평가하고 있다.

다만, 「안전보건관리규정」의 경우 적용 대상인 종사자에 대해 ‘수급업체, 관계수급업체, 건설공사 관련 노무제공자 등을 지칭한다.’와 같은 구체적인 대상 명시가 필요하며, 「안전보건관리규정」 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절차서, 지침서 준용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규범 간 연속성 및 연계성 확보 반영이 요구되고 건설공사 관련사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별도 명시되지 않았으나, 관련 안전관리기준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지침서는 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준 및 지침서에 대한 근거 마련 차원에서 규정 내 건설공사 항목의 반영이 권장된다.

추가로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실제 매주 순회점검, 분기별 합동안전점검, 임원진수시특별점검, 정기 안전점검 등을 운영 중이나, 안전점검의 날 수행을 위한 근거 단순 명시 및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만 반영되어 있으므로, 안전점검의 이행력 제고와 내실화를 위해 명확한 실시주기와 주관부서 지정, 연간계획 수립 후 이행에 관한 사항, 작업중지 및 개선요구 등 점검결과에 대한 사항 등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절차서 및 지침서는 물·소금·이온음료 비치 의무 등 최근 관계 법령, 고시, 지침의 변경사항이 미반영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대응이 권장된다.

한편, 기관이 건설공사 발주현장을 대상으로 제정한 건설현장 안전관리기준은 「건설산업진흥법」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있는 건설공사를 적용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어 다양한 규모 및 조건으로 발생가능한 건설공사를 고려하여 적용 대상 확대가 요구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하는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 항목을 반영함으로써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지침서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거나 「안전보건관리규정」과 통합관리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내 미반영 되거나, 미흡하게 명시된 항목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절차서나 지침서, 관련 기준을 통해 대부분 수립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세부 규범들의 준용에 대한 근거를 반영함으로써 향후 안전보건 환경의 다양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절차서·지침 간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적용 기준 및 준용 근거 정비
2. 안전점검 실시주기, 주관부서 및 점검결과 조치사항이 일관되게 운영되도록 점검관리 기준 구체화
3. 법령 및 지침 변경사항이 규정에 반영되도록 모니터링 및 반영 절차 정비

【5】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조직·업무 특성, 사고통계 현황 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목표와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서면 검토와 이사회 의결을 통해 계획을 확정하였다. 안전경영책임계획의 목표는 세부 추진과제별 목적과 목표를 중심으로 설정되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2개의 추진전략과 2개 분야, 총 9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운영하였다. 각 세부 추진 과제는 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정성적 요소와 정량적 요소를 병행하여 설정하였다. 안전경영계획의 구성 항목, 담당 부서 및 담당자 지정, 절차와 일정 등은 체계적으로 수립되었으며, 분기별 이행점검과 반기별 성과측정을 통해 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하였다.

안전경영책임계획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확정되었으며, 목표·전략·추진과제 간 구조가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다. 과제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응답자 수가 확대되었으며, 노무사와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고자 한 점도 긍정적이다. 안전보건을 위한 신규 투자로 미래인재원에 AI CCTV를 설치하는 등 기존 예산 항목에 없던 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 집행을 추진한 점 역시 안전경영에 대한 기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조직 개편과 직제 변경에 따라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재지정하고, 안전보건부 인력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세부 과제별 절차와 일정, 달성 목표가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된 점은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판단된다.

다만, 전년도 이행 결과에 대한 주요 성과와 미흡한 점은 언급되었으나 미흡한 시사점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해당 시사점이 차년도 과제에 충분히 환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문조사 및 워크숍을 통해 과제 도출의 기반은 마련하였으나, 전년도 환류 이후에도 추가적인 분석과 보완이 이루어졌다면 현재보다 완성도 높은 계획 수립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안전경영책임계획에서 수립한 예산과 이행점검 및 이행 결과상의 예산 간 일부 변동이 발생하였으며, 세부 과제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항목에 예산이 지출된 사례도 확인된다. 이행점검과 관련하여 분기별 점검과 반기별 성과측정은 이루어졌으나, 이행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점은 보완이 필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전년도 이행결과가 차년도 계획에 반영되도록 환류 기준 및 개선 반영 절차 구체화
2. 과제별 예산과 이행성과 간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관리 기준 정비
3. 이행점검 결과가 계획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이행관리 및 점검절차 구체화

2. 관리역량

[1] 위험성평가 실시 체계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직영·도급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및 이행점검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적절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평가 전 단계에서 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평가 결과 공유 및 활용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절차서 내 위험성평가 항목을 준용하여 수립한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을 통해 매년 6월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점 및 부서별 실시결과를 위험성평가 총괄 부서인 안전보건부가 취합 후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아차사고 사례 공모전을 통해 도출된 위험요인과 매주 실시하는 순회점검 및 분기별 합동안전점검 등을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 건강검진 결과를 정리한 자료, 각종 점검 및 측정표 등 다양한 자료와 활동 결과를 제공하여 지점, 부서별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의 내실화와 상향 평준화를 유도하는 부문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안전보건관리규정」의 경우 ‘위험성평가 연간 실시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관련 고시와 지침에서 요구하는 근로자 참여, 개선대책 수립 및 실시, 공유, 기록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절차서에 반영되어 있어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절차서 간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절차서는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법령 및 고시, 지침 등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25년 11월 8차 개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근로자 참여 사항과 고시에 의거한 위험성평가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관의 '25년도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은 모든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전체 단계 참여와 위험성평가 단계별 활용할 자료와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명시하였고, 체크리스트를 통한 위험성평가 적정 수행 여부 점검, 감소대책의 적기·적정 이행 여부 점검, 결과 공유 대상 확대 및 기록 보존에 대한 사항 등을 명확하게 반영하여 내실화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3×3 빈도·강도법을 활용한 위험성 결정 방법은 기관 업무 특성과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빈도와 강도 단계별 구분사항 구체적 보완 및 5×4 기법 등 위험성 결정 범위의 확대가 권장된다. 실제로 빈도(가능성)의 경우 가장 높은 '3'이 '수시로' 노출되는 위험으로 명시되어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임의 판단 또는 조정되는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강도(중대성)은 '3'이 '휴업을 수반하는' 부상 또는 질병, 사망으로 구분되어 휴업을 요하는 모든 위험요인에 대해 가장 높은 '3'이 부여되어 경미한 사항도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임의 조정하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추가로 즉시·신속 개선 대상인 유해·위험요인의 완전제거 전까지는 임시대책 시행으로 급박한 유해·위험요인 노출 최소화 방안 수립 및 이행이 요구된다.

한편, 기관은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내 책임과 역할을 최고경영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지킴이, 근로자로 분류하여 부여하였다. 또한 안전보건총괄부서는 위험성평가 계획·관리 및 내실화를 위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절차서상에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의 중간검토를 통해 위험성평가 결과의 신뢰성 및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의 책임과 역할은 절차서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아 절차적 통일성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위험성평가 담당자인 안전보건지킴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및 실습과정 마련 등의 다양한 지원이 권장되며, 절차서상 근로자에게 부여된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은 위험성평가 담당자인 안전보건지킴이로의 변경 부여가 요구된다.

미래인재원과 대구지사(이하 '현장'이라 한다)는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안전보건경영절차서」에 따라 수립된 본사의 위험성평가 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인재원은 시설별·작업공간별 유해·위험요인의 정확한 파악을 통해 실효적인 위험성평가와 개선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회사 및 수급업체 전반을 고려한 연수시설, 저수조 등 밀폐공간, 야외 LPG저장소 등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부점마다 안전보건지킴이를 지정하고 '25년 상·하반기 안전보건지킴이 연수 교육을 전문가 초청강의로 진행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모든 부점은 안전보건지킴이의 주도로 사전조사와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각 부서마다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회의를 통해 위험성결정을 하는 등 평가 참여자에게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이행하였다.

미래인재원의 경우 반복적인 정기·수시평가 이행과 더불어 위험성평가 결과를 관리감독자인 미래원장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결과 회의는 근로자와 수급업체 모두

참여하여 진행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안전관리실 주관하에 본사 및 수급업체 전체, 지역본부별 1곳, 신설지점 등 다양한 현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위험성평가 결과가 실제 작업 현장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부점별로 이행·점검 체크리스트를 단계별로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개선대책의 이행책임자와 점검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개선 현황 점검을 하고, 현장작동성 강화를 위한 감소대책 직접 점검 실시 등 절차 누락이나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면담 결과 근로자들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인식 및 참여 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위험성 결정 및 개선대책 수립 등 주요 절차에 근로자들의 참여 여부를 입증하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래인재원의 경우 위험성 결정 기준에 있어 감전·누전 등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중대성이 미래인재원과 자회사인 HF파트너스간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어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아차사고 사례 중 일부가 정기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으므로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이행여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대구지사의 위험성평가는 사전준비 단계부터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까지 단 하루만에 이행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물론 사무 공간 위주의 업무 특성상 위험성평가를 단기간 내 완료할 수는 있으나 유해·위험요인 발굴 내용이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며 신규 발굴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위험성평가 진행 시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수립의 다양성 확보를 권장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위험성평가 방법 및 위험성 결정 기준 구체화
2. 위험성평가 절차서 및 실시계획 상 책임과 역할 정비 필요

[2] 노동자 건강 유지·증진 활동 체계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노동자의 건강 유지·증진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과 더불어 직업병,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고객응대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인프라와 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안전보건경영절차서」에 근거하여 '25년도 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 사업장의 유해요인 파악을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라 한다)에 대한 정기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MSDS 대상 물질 목록을 최신화하고 관련 자료 게시 등 관리 범위를 설정하였다. 또한 신규 화학물질이 추가될 경우 즉시 목록을 갱신하고, 교육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 교육 실시 후 결과를 안전보건부에 회신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에 따라 '25년도 공기질 측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각 지점별 공기질 측정기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매월 지점별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취합·검토하며 적정 공기질 유지 여부를 관리하고 있다.

HF미래인재원의 작업환경측정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평가를 진행하며 냉방부하가 최대치에 달하는 하절기에 기계실을 대상으로 소음 측정도 병행하였다. 다만, 일부 측정 대상 물질은 사용 시간과 빈도가 미미하여 이번 측정에서는 제외되었고, 향후 사용량이 증가할 경우 즉시 재측정이 가능하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HF파트너스의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파악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을 위하여 '25년도 건강진단 추진 계획안을 수립하여 전문기관 건강검진 대행 서비스를 도입하였고, 직무스트레스, 감정노동 수준평가,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 등을 실시하여 개인별 결과 및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증진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건강진단에 따른 이상소견자 현황을 파악·관리하며 이상소견자 대상 집중관리 프로그램, 해피힐링워크 등을 운영하며 전사공지, 문서시행, 메일독려 등으로 참여를 유도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 별 이상소견 내역을 누적 관리하고 활동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차년도 보건관리계획 수립 시 환류 사항을 포함하여 이행 결과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운영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의 활동도 진행하고 있으나 이는 '23년도에 실시한 정기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당시 임직원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관련 증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전체 대상 대비 응답률은 20% 미만이었다. 신뢰성 있는 유해요인 파악을 위하여 향후 조사 시에는 응답기간을 확대하거나 전사 공지 및 지점별 관리자 안내 등을 통해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대상자 파악 및 활동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계절적 요인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지침」에 따라 감염병, 온열·한랭질환 발생우려 작업 및 공정 등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대상자 민감군을 파악하여 생물학적·화학적 유해요인의 노출저감 및 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수립 및 반영을 권고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조사 응답기간 확대 및 안내를 통해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대상자 파악

[3] 안전보건교육·안전인식·활동 참여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안전지식 습득 및 실천을 통한 안전보건인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소속 직원 및 작업장 노동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신고·제안·포상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안전보건경영절차서」에 따라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였다. 법적 안전보건교육 의무기관은 아니지만,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절차서에 따라 전 직원 대상 분기별 3시간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을 내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단발성 수급업체까지 직급·업무별 교육을 구분하여 세부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전문성과 대면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한 집합교육을 늘려 실효성을 강화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실제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매월 사이버 연수가 상시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교육은 신청자에 한해 진행되며, 전 직원 대상의 안전보건 사이버연수 교육은 신청한 직원에 한해 진행되기 때문에 분기별 3시간 정기교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직원이 일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교육 결과 보고 및 이행 세부 내역에서 분기별 교육 모니터링 보고서에 표기된 이수율은 교육 신청자를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로써 실제 전 직원 전체의 정기교육 이수율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과 자동제세동기(AED) 관리책임자 교육의 경우에도 필수 교육으로 지정했으나 교육 대상자가 100% 이수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교육 실시 결과 본사 7층의 상주인원 대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미이수자에 대한 보완 교육 및 관리방안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분점·교육별 미이수자에 대한 관리가 실질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며, 교육 시간 미달자 및 미이수자에 대한 세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관리자 및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본사 관리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대상자들은 기관의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안전보건교육과 비상상황 시 조치사항 등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 인식 상태가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무에 따른 안전수칙과 위험성평가에 대한 인식 및 참여도가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안전보건제안 활동은 「안전보건경영지침서」를 근거로 본사 주도 캠페인, 제안 활성화 프로그램, 포상제도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 및 참여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특히 아차사고 사례 발굴 캠페인을 실시하여 전사 구성원의 안전 인식 제고와 사고 예방 활동의 생활화를 도모하였으며 'HF안전강조주간'에 안전 퀴즈대회, 안전아이디어 및 안전슬로건 공모 등 참여형 이벤트를 다수 개최하여 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였다. 포상규모 역시 전년 대비 확대되어 참여 동기 부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포상제도 운영 측면에서는 '25년도 안전보건업무 포상계획에 따라 부점별 안전보건활동 실적을 종합평가하여, 위험성평가 충실도 및 우수사례 제출실적 등을 기준으로 상위 2개 부점을 각각 최우수 및 우수로 포상하였다. 또한 자회사 및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3명의 우수사례자를 선정, 포상함으로써 협력업체의 안전역량 강화와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 현장 내 위험요소 확인 시 '위험상황 앱'을 통한 상시 신고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 홈페이지 및 내부 게시판을 통한 안전·보건 제안 접수 시스템도 지속 관리 중이다. '25년에는 총 8건의 제안을 수렴하여 부지점 안전체험관 실습 확대, 구급용구 관리체계 마련 및 비치 등 실질적인 개선조치로 이어져 제안활동의 실행력을 강화한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현장은 「안전보건경영절차서」와 본사에서 수립한 연간 교육계획을 근거로 안전보건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분기별 정기교육과 직급별 맞춤형 과정, 재난대비훈련, 재난안전체험, 위험성평가자 전문교육 등 법적교육 및 내부적 근거에 의거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온라인 과정을 제공하는 사이버연수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안전보건문화 확산을 위해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상·하반기에는 안전보건지킴이 연수교육, 재난대비복합훈련, 소방훈련, 자동제세동기(AED) 관리책임자 교육 등이 이행되며, 위험성평가 담당자 등 일부 직급에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전문화 교육을 별도로 진행하였다. 본사에서 연간계획 수립 시 직전년도 교육 이행 결과 및 환류사항을 분석해 개선점을 도출하고, 직원별 교육 이수 현황을 분기마다 모니터링 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 미이수자는 메신저 등 개별 연락으로 독려하며, 각 분기별 교육 이행율은 전사에 공유하여 실제 교육 이행 수준을 관리하고 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본사 주도의 전사적 안전역량 강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이다. 대표적으로 '아차사고 사례 발굴 캠페인'과 'HF안전강조주간'을 운영하여 직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해 안전의식 내재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동시에 도모하였다. 자회사 및 수급업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공모를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우수사례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고 포상을 통해 참여 동기 부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현장의 관리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 결과,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인식 수준과 참여 정도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위험성평가와 주요 유해·위험요인, 비상상황 대비 및 대응조치,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사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와 이벤트를 마련해 안전 참여와 의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의 전체적인 참여율은 다소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 활동의 중요성과 적극적 참여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여 지속적으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교육 미이수자 및 이행률이 관리되도록 교육관리 및 모니터링 기준 정비
2. 교육 이수율이 전 직원 기준으로 반영되도록 교육관리 기준 구체화

【4】재해조사 및 비상상황 대비·대응 능력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고), 비상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한 지침·매뉴얼·절차서 또는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비상상황 시 재해경감을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 「비상시 대비 및 대응 절차서」, 「화재폭발 및 위험물 예방 지침」, 「응급처치 등 지침서」, 「재난대비 위기관리 매뉴얼」 등을 통해 비상사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화재·지진·감전·태풍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 시나리오를 다각화하여 관리 중인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각 지침별로 반영하고 있는 시나리오 종류에 차이가 확인되므로 통일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비상 대응 훈련, 체험형 재난안전 교육, 재난대비 복합 상황조치 훈련 등 재난 대비 훈련 계획을 다양하게 수립 및 시행 중이며, 전사적으로 안전 조치에 누락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본사에서 지점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체험형 재난안전 교육의 경우 수급업체 및 노조, 본사 및 지사 전체를 포함하여 교육을 진행하여 안전의식 고양을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다만, 재해 발생 상황별 시나리오가 비교적 다각화되어 있는 반면 실제 훈련 내용은 공습·화재대비 민방위 훈련,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에 치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있고, 지점·인재원의 경우 지역별 안전체험관 제공 프로그램으로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교육 내용 및 수준, 교육시간 등이 다소 상이하므로 일관된 수준의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에서의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기관은 피난안내도 관련 전사 표준모델 수립 후 본·지점 일괄 정비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균등하게 관리하고 있고, 본사 및 지점의 시설 및 장비 현황, 구급용구 등 비치 확인 내역을 보고·관리하고 있어 전사적인 관리체계를 양호하게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재난 및 사고 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사·센터에 대해 동일한 기준의 매뉴얼 체계를 정비한 후 비상연락망 및 유관기관 연락망, 상주 수급업체 리스트 등을 현행화하여 관리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다만, 일부 지사의 재난 및 사고 대응 매뉴얼상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에 주요 기관이 누락 되는 등 보완 필요한 사항이 있으므로 전사 차원에서 추가 확인 및 관리가 필요하다.

산업재해는 '25년 3건(출퇴근 재해 1건, 업무상 사고 1건, 업무상 질병 1건) 발생하는

등 많지 않으나, 「사고조사 및 처리 지침」 규정에 따라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을 양호하게 실시하였다. 지침상 법령 개정사항 반영, 보고체계 및 조사보고서 작성, 개선대책 수립 및 이행, 공유 등 내용도 적절하다. 다만, 지침상 안전보건주관부서의 재해조사 보고서 제출 시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향후 보고 시기가 불필요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25년 발생한 산업재해 3건 관련하여 안전보건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후 해당 내용을 사내 홈페이지 게시판 활용하여 본사 및 지사에 전파 및 공유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해당 게시글 조회수가 저조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파 교육 관련하여 근로자 대상 홍보·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총괄하면, 동 기관의 비상상황 대비대응 및 재해조사 규정은 대체로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고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한 본사 차원에서의 노력도 어느 정도 확인되나, 현장에서 세부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침 세부사항 보완, 모니터링, 근로자 홍보 등 지속적인 관리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비상상황 시나리오 및 대응수준이 일관되게 운영되도록 시나리오 기준 및 대응 절차 정비
2. 지침상 재해조사 결과 제출 시기 명확화

[5]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관리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도급사업 시 수급업체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누락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업체(관계수급업체 포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를 위해 인적·물적 지원,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도급사업 안전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도급사업에 따른 수급업체의 선정 및 안전 관련사항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5년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에 수급업체를 위험도에 따른 상주업체와 비상주 도급사업으로 구분하여 현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위험작업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방법별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수급업체를 계약금액과 도급기간 등에 따라 구분하여 현황을 유지·관리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계약체결 이전 단계에 도급사업 참여업체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요구하는 등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대해 고지하고 있으며 이후 수급업체로 부터 제출받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검토하여 도급사업 담당자는 적격업체 확인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안전보건 수준이 취약한 수급업체에 대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표준안을 제공하여 업체의 안전보건 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다만, 경쟁 입찰로 진행된 도급의 경우 입찰공고 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등에 대한 사전안내 및 적격업체 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며 사전적인 평가 항목과 사후적인 재평가 항목이 구분되어 있어 효과적인 안전수준 평가가 이뤄지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은 상주 수급업체가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운영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 합동안전점검, 매주 순회점검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 평가·점검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안전보건협의체를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운영하고, 협의체 회의를 통해 혼재작업을 파악하고 있으나 공중이 혼재되어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 미리 파악하고 조정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장은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과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지침」에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였다. 미래인재원에서는 지침에 따라 적격수급업체

선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구지사는 도급사업이 없어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한 실적이 없었다. 이외에 부실 채권관리를 외부업체가 진행하고 있었으나, 본사에서 총괄계약을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미래인재원에서는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인 HF파트너스와 구내식당 업무를 수행하는 풀무원푸드앤컬처 2곳의 상주업체를 관리하고 있었다. 기관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대상이 위의 2곳이 해당되어 매월 협의체 회의, 매주 순회점검, 분기별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상주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미래인재원 담당자가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 자체개선 또는 미래인재원과 합동 개선 후 그 결과를 기관 본사에 보고하였다. 매월 협의체 회의에서는 혼재작업 조정, 교육지원사항 등 뿐 아니라 위생시설 개선 등 수급업체의 고충처리도 같이 협의하고 있었다. 비상주 수급업체를 대상으로는 업체의 작업 시 현장 안전보건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하고, 보고서를 업체와 같이 작성하는 점은 비상주 업체의 안전의식 고취에 고무적인 조치로 보인다.

또한 미래인재원에서는 도급사업 적격업체 선정 기준에 따라 화기작업, 밀폐공간 작업 등 6가지 도급작업에 대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위험작업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60점 이상에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있다. 예산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위험작업에 대한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점은 바람직해 보이나, 화기작업이나 밀폐공간 작업과 같은 고위험작업도 적격업체 기준이 동일하여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안전보건수준평가지 평가원의 자격기준에 대한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전담부서 직원 또는 안전보건전문가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모든 도급사업에 대해 계약 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사전평가로 진행하고 도급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안전보건수준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도급사업 안전보건계획서의 현장이행여부에 대한 사항을 평가하고 환류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대한 재평가 주기가 지침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인해, 1년 이상의 장기 도급일 경우 계약 완료 후 재평가를 진행함에 따라 재평가 주기가 길어지는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

기관은 도급사업에 따른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인프라 지원을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도급사업 안전관리 지침」에서 안전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위생시설·휴게시설 등의 설치와 이용 협조, 안전보건정보 제공 등의 지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기관이 도급사업 착수 전 수급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정보

제공 및 비상시 신고, 작업중지제도 등 안내하고 안전보건교육, 보호구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을 위해 위험작업에 따른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폭염 및 온열질환 예방 등 시기별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밀폐공간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본사 수급업체의 경우 수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기관은 수급업체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위생시설 등의 인프라 제공을 위해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설의 청결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나 본사의 경우 직원휴게실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상주 수급업체에 대한 휴게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에 따른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에서 도급한 작업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를 수급업체에 사전에 제공하여 작업 시작 전에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예방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미래인재원에서는 수급업체 인프라 지원하는 사항을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인서’에 문서로 안내하고, 수급업체 근로자 모두에게 서명을 받고 있다. 확인서 주요확인 사항으로는 특별교육, 위험성평가 및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정보제공, 비상연락망 및 신고,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 위치 및 사용, 작업중지제도 이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안전보건정보는 작업 내용과 연계되는 미래인재원 위험성평가 내용과 안전보건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고소작업, 중량물 작업, 밀폐공간 작업 등 작업특성에 맞는 근골격계질환 예방, 복합가스농도측정, 밀폐공간 작업 안전가이드, 고소작업대 안전매뉴얼, 수공구 안전수칙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HF파트너스의 직원 비상대응 안전교육을 위해 교육장 대관, 밀폐공간 출입작업자 특별교육실시 및 확인 등 관계수급인을 위한 지원사항이 지침과 같이 현장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도급사업 안전관리 기준이 계약조건 및 사업특성에 따라 적용되도록 관리기준 구체화
2.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및 재평가 절차 정비

2 「안전수준」 범주 심사

1. 작업장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 작업장 안전관리

[1] 작업장 기본 안전보건관리 수준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노동자 및 이용국민이 사무실, 작업장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거나 작업할 수 있도록 통로 확보 및 정리정돈, 출입문 및 비상구 유지·관리, 위험요소에 대한 경고,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안내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실행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미래인재원의 옥상, 6층 객실 및 창고, 3층 구내식당, 1층 창고 및 EPS·TPS, B1 기계실, 저수조실, 전기실, 집수정, 발전기실, ESS 배터리실 등을 현장순회하였다. 진출입로 및 이동통로의 정리정돈 상태는 양호하였으며, 출입문 열림 방향 표시 상태 및 모든 구역의 조도는 적정하고, 출입 제한구역에 시건 조치 상태 역시 적정하였다. 모든 고정사다리에는 등반이 울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층별 A형 사다리를 창고에 보관하여 사다리 이동을 최소화 하였다. 아울러 사다리 보관 장소에 사다리 안전 안내문을 게시하였으며, 사다리 자체에 2인 1조 안내 문구를 표시하고 있다.

창고, 기계실, 전기실 등 출입문에 금지, 경고, 개인보호구 3종류의 안전보건표시가 적정하게 게시되어 있으며, 화학물질 보관창고에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적정한 한글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고, 별도의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건물 층별 계단참 벽면에 안전대 걸이대를 설치하여, 층고가 높은 전등 교체 작업에 사다리 작업 시 활용토록 하여 고소작업의 안전을 강화하는 노력 등이 잘 나타나고 있다.

대구지사는 대구 삼성생명빌딩 22층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며, 상담실 7개소, 고객대기 공간, 회의실, 업무 공간, 탕비실, 창고, 휴게실 1곳을 운영하고 있었다. 진출입로 충돌방지조치, 이동통로의 정리정돈, 휴게실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특이점은 사무실 바닥이 카페트로 되어 있어 자체 위험성평가 시 걸려 넘어짐의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현장순회 시 관리상태가 양호하여 위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사무실 실내 환경을 위하여 '공기질 지킴이'라는 센서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공기질을 관리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다.

[2] 기계·전기 설비 위험방지 및 추락예방 조치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전기)기계·기구·설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정 위험예방조치를 실시하고,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안전관리대상 사업·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 및 이용객의 추락 방지와 시설·설비 등의 붕괴·도괴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현장은 「안전보건경영지침서」를 근거로 기계·전기 설비 및 각종 건물 내 위험요소에 대한 예방 및 관리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미래인재원의 경우, 위험기계기구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교류아크용접기, 예초기, 그라인더 등 유해·위험기계에 대한 방호장치 목록을 점검하고, 적절한 방호장치 설치와 보관 장소의 적합여부 파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기재해 예방 지침에 따라 방재실과 전기실의 공구보관함 및 안전보호구함 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자동소화패치, 멀티탭의 안전캡을 설치하였고, 추가 구매 요청 등 사전 예방에도 적극적이다.

미래인재원의 HF파트너스는 건물·시설관리를 담당하며, 매년 LOTO(잠금·표시장치)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비일상적 작업 환경에서도 안전수칙 준수가 이어지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검전기, 누설전류계, 일산화탄소 측정기, 절연시험기 등 주요 측정 장비는 검교정 성적서까지 관리되고 있으며, 승강기, 도시가스 등 주요 설비에 대해서도 요구되는 교체주기를 확인하고, 각종 안전인증·검사 대상 현황을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한편 LOTO 장비 목록 작성 및 사용대장 기록 등 현장 적용도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구지사의 경우, 사무 공간 내 기기(AED, 컴퓨터 등) 관리는 「안전보건경영지침서」에 맞춰 충실히 이행되고 있다.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점검표 작성과 더불어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일일점검 등 체계적 관리가 계속되고 있다. 멀티콘센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덮개를 설치하고, 고전력 제품 사용 시 허용전력을 엄격히 준수하는 등 전기적 위험요소 차단에도 세밀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사무실 내 전선 및 배선 정리는 위험성평가와 감전위험 요인 발굴에 따라 적절히 관리되고 있으며, 탕비실내 온수기, 냉장고 등 습윤 구역에 설치된 전기기계기구도 관리상태가 양호하다.

본사 주도로 건축물, 시설물 등에 대한 특별 안전·보안 점검과 계절별 특성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옥외 시설물의 설치상태, 누수 및 파손 위험 등을 미리 확인하고 전기안전수칙 및 근로자 안전 등에 대한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3] 화재 및 화학물질사고 예방활동 수준

핵심가치

인체에 유해하거나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공기관은 위험물질에 의한 폭발·화재·누출 사고 예방과 노동자 중독·질식사고 예방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미래인재원은 화재와 폭발, 위험물 누출, 질식위험작업과 화학물질 관련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실무 지침 및 예방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 예방 지침」을 기반으로 일상점검과 각종 소방계획, 대피훈련까지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소방안전책임자를 지정하고, 실질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소방안전원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소방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종합점검과 작동점검을 꾸준히 이행 중이며, 내부 자위소방대 운영, 소방서와의 합동훈련, QR코드를 활용한 일일 소화기 점검 등 실효적 관리 방안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화재취약시설을 지정하여 관리 중이며 식당에는 K급 소화기와 가스누출감지기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외부 LPG가스 저장소는 인화성 물질의 목록 및 특성을 기록하고 폭발위험장소 2종으로 지정하여 주변 조명 등 전기 설비는 기준 이상의 방폭 기재자로 사용 및 시공하였으며, MSDS는 제품명, 사용처, 보관 장소 등이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다. 면담 결과, 근로자들의 화학물질 취급 및 특별관리물질 교육 내용, 현장 안전수칙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밀폐공간 관리에서는 저수조, 집수정 등 시설에 대한 주기 및 위치 등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밀폐공간 작업의 경우 관련 특별교육과 장비 사용법 숙지 교육, 경고표지 부착, 그리고 공기호흡기 및 측정 장비의 주기적 검교정도 진행 중이며, 구조용 삼각대·호이스트 등 장비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밀폐공간 작업의 경우 작업자 1명이 변경되었으나 변경 인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내역이 누락된 사례가 있었고, 밀폐공간 출입자 관리대장과 작업허가서, 가스농도 측정 기록 간의 시간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도 확인하였다. 또한, 밀폐공간 훈련 시나리오에 포함된 보호구 착용이 실제 훈련에서는 충분히 실행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0조 긴급 구조훈련에 따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보호구 착용 절차의 이행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대구지사는 임차 사무실을 사용 중이며, 화재를 대비하여 사무 공간 내에 피난안내도를 적절히 부착하고, 소화기 위치를 명확히 표시하여 직원 및 방문객이 비상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소화기는 매월 안전보건지킴이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출입구에는 화재대피용 마스크를 비치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준비하였다. 다만, 민원인 출입이 잦은 공간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 화재대피용 마스크가 안전보호구함 안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다소 제한적이므로 화재대피용 마스크는 누구나 쉽게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재배치하고 피난 안내도에는 자동제세동기(AED)의 위치를 표시하여 실제 화재 및 비상상황 발생 시 민원인과 근로자 모두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을 권장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훈련 시 밀폐공간 훈련 시나리오에 포함된 보호구 착용 절차 이행 필요
2. 화재대피용 마스크 재배치 및 피난 안내도 상 자동제세동기 위치 표시 필요

【4】 위험 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핵심가치

기관은 고위험 작업 수행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작업허가제도와 노동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직접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작업중지 요청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미래인재원은 「안전작업허가 지침」에 따라 총 43건의 작업에 대하여 안전작업허가서를 승인하였다. 작업담당자가 작성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고 있으며, 미래인재원 안전보건지킴이(안전담당자)가 안전요구사항 등을 확인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고 있다. 미래인재원에서는 기관 본사 지침에 따라 화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 출입 작업 등 보충작업허가 대상 작업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작업에 대하여 안전작업허가서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다.

다만, 본사 지침에는 모든 보충작업허가서는 기본적으로 일반위험작업 허가서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래인재원에서는 일반위험작업 허가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는 본사에서 분류하는 ‘일반위험작업 허가서’를 받아야 하는 작업 대상의 기준이 모호하며, 허가서 승인서 검토하는 점검사항에 대하여 현장에서 해석의 혼선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안전작업허가 지침」의 현장작동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대구지사의 경우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은 없었다.

미래인재원은 작업중지 요청 건이 총 5건이 있었으며, 폭염 및 호우주의보 등 기후 관련 건이 4건으로 많았다. 도급계약 시 작업중지 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기실 및 기계실 등에 작업중지요청 제도 안내 배너를 게시하여 관련 제도 홍보를 실시하고 있었다. 수급업체에게 폭우로 건물외부 청소작업 일정을 연기 요청한 사례가 있어, 도급업체와 수급업체와의 소통은 원활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에서는 직원의 외부 출장 등 국내 업무수행 시 근로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장 시 안전관리 지침」을 운영하고 있었다. 출장 시 현지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후 적정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후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였으며, 본사 주관 ‘교통안전 특강 및 직원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상반기 실시한 안전보건 사이버 연수 교육 중에서도 출퇴근 재해예방 관련 내용으로 기관 소속직원 및 자회사 수급업체 직원이 수강한

이력을 확인하였다. 덧붙여 현장의 자체적인 안전한 업무수행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면, 더욱 안전한 외부 출장업무 수행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안전작업허가 지침」의 현장작동성 강화 필요

3 「안전성과」 범주 심사

【1】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개선 필요사항 이행 수준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전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개선 완료 여부와 현장 적용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개선 이행 심사〉

해당없음

〈개선 이행 노력〉

해당없음

[2] 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경영책임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내용, 재해현황 및 다음 연도 주요 계획 등을 안전경영책임보고서로 작성하여 관리함으로써 주요 안전활동의 지속적인 이행과 발전을 통해 안전경영책임을 정착시켜야 한다.

심사의견

〈안전활동 추진 실적의 적정성〉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통해 안전경영 추진방향, 전략과제, 조직, 예산 및 안전활동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유지,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교육 및 점검 등 기본적인 안전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전사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활동 추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안전전담조직 운영 등을 통해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전국 3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유해·위험요인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등 위험요인 관리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계획에 따라 계획(Plan), 실행(Do), 점검(Check), 개선(Action)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안전경영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나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개선성과의 지속적인 관리 측면에서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도출된 개선사항을 단기·중기·장기 계획으로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환류체계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안전경영 실적 및 자체 평가를 통해 일부 위험성평가 기법의 고도화 필요성 등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되었음에도 개선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이행 점검 체계의 구체성이 부족하며 안전경영계획과 개선과제 간 연계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전담 조직 및 인력은 구성되어 있으나 안전 관련 자격 보유자 비율이 제한적이며 일반 인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안전관리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추가적인 역량 강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사, 조직, 재정 등에 환류하는 등 성과와 보상에 구체적인 연계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도급 및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수행에 있어 발주의 관리 책임 이행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및 점검 체계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험요인 관리, 안전관리 수준 평가, 안전관리 이행 여부 점검 및 개선조치 이행 확인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감독 체계의 구체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종합적으로 기관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조직 구성 및 안전활동 추진 등 기본적인 안전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환류체계 강화, 개선과제의 계획 및 실행 연계성 확보,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 등 안전경영 활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임원 등의 안전활동 성과측정〉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최고경영자를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로 지정하고 안전보건경영계획 수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임원 및 경영진의 현장 안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경영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통해 안전활동 추진실적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최고경영자 및 임원이 정기적으로 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건협의체 및 합동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등 경영진 중심의 안전경영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임원의 안전활동 성과측정에 있어 안전활동 결과가 조직 전반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으로 체계적으로 연계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체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성과측정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및 환류체계의 구체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험성평가, 내부심사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하여 임원 수준에서의 체계적인 점검 및 이행관리 체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으며 성과측정 결과가 안전경영계획 수립 및 조직 운영 개선에 체계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체계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기관은 임원 중심의 안전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임원 안전활동 성과측정 및 성과관리 결과의 환류체계 및 개선 연계성 측면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며, 향후 성과측정 체계의 구체화 및 개선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경영책임 활동에 대한 자체심사(Audit) 실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내부심사 및 경영자 검토를 실시하고 시스템 운영의 적절성 및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는 등 자체심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내부심사를 통해 시스템 운영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등 자체적인 안전경영 점검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체심사를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개선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환류체계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자체심사 결과가 안전경영계획 수립 및 실행과 체계적으로 연계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체계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체심사 결과 및 외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경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개선과제의 이행 여부 및 개선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점검 체계의 구체성은 일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경영책임계획 이행 실적에 대한 주무부처 점검 및 후속조치 계획수립 여부〉
주무부처 안전경영책임계획 점검 요청 후 기관의 후속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도출된 개선사항을 단기·중기·장기 계획으로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환류체계 강화

[3]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노력 및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대국민, 지역사회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하나의 안전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이 종사자를 위해 추진한 안전문화 확산 노력>

기관장은 “최고경영자와 노동조합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합의된 의지를 바탕으로 모든 종사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보장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한다”, 및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국민과 지역사회의 안전보건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경영방침을 선언하고 노사가 합심하여 기관의 안전문화 증진에 노력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

이에 따라 기관은 노동조합 등 ‘모든 근로자 참여’로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 의견 기반 위험요인 발굴과 개선대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공사 및 자회사·수급업체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을 100% 완료하였으며, 위험성평가 전체 과정에 노사가 100% 참여하였고, 공사 및 수급업체 위험성평가 이행점검을 반기별 1회로 강화하여 작업 시작 전 위험요인 사전식별-대책수립-이행점검을 관리한 점 역시 높이 평가한다.

또한, 근로자 신체 및 마음건강 증진 활동으로 반기별 건강진단 수검율 모니터링 보고 및 분기별 전사공지, 메일, SMS 등을 통한 건강진단 수검 독려 활동과 '25년 실시한 직무스트레스 측정, 건강검진 결과 및 직원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를 통한 법적 주기를 준수한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기관이 대국민(종사자 제외)을 위해 추진한 안전문화 확산 노력>

기관은 타 공공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지역사회 안전 인프라 발전에 기여하고, 안전강조주간을 통해 대국민 참여를 유도하여 공사의 안전문화를 대국민적으로 확산하고자 타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인프라 개선 및 문화 확산 활동을 실시하였고, 안전강조주간을 운영하여 대국민 참여 이벤트(퀴즈대회 등)를 실시한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안전문화 확산 활동 노력(①과②)에 따른 성과>

기관은 종사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여러 안전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또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하게 한 점 등은 실행력이 인상적이다.

특히, 본·지사 아차사고사례 발굴 캠페인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관리 우수부점 포상, 아이디어 공모 포상 및 특별 안전업무 제안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 역시 긍정적이며, 안전보건공단 등 외부기관 협업 캠페인 및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 참여 역시 긍정적이다.

【4】 사고사망 감소 성과 및 노력도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활동을 통해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과 관련된 모든 종사자의 사고사망 예방 등 안전성과를 창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사고사망 예방 실적〉

기관은 2025년 산업재해통계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가 없었다.

〈사고사망 감소 성과〉

기관의 사고사망 승인은 심사 대상연도 직전 3년('22년~'24년) 평균 0명에서, '25년 0명으로 동일하였다.

〈사고사망 대응 노력도〉

해당없음